

1. 개정 이유

농업재해 정의에 ‘황사’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
(‘21.4.13. 공포)됨에 따라 황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고 지원 기준을
설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○ ‘황사’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(림)작물 국고 지원 기준 설정

- 황사는 피해 규모 및 내용*을 감안하여, 시·군당 50ha 이상 농(림)작물
피해 발생시에 국고 지원 기준 설정(안 제2조 제1항 제1호)

* 황사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, 황사로 인한 일조부족으로 작물 생육저하 피해발생 가능성
(현재까지 황사로 인한 농작물 고사, 가축 폐사 등 구체적 피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음)

※ 농(림)작물 외 가축, 시설 등은 모든 재해에 대해 국고지원 기준이 동일(시·군당 피해액
3억원)하므로 별도 기준 불필요(시행규칙 제2조 제1항 4호)

< 현행 재해별 국고지원 기준 >

○ 작물은 재해별 50, 30, 10ha / 가축 등은 모든재해에 대해 3억원 이상

- (작물) 대부분 재해*는 시·군당 50ha 이상 피해시 국고를 지원하나, 일부
집약적 피해를 입히는 재해**는 30 또는 10ha 피해시 지원

* (1호: 50ha) 가뭄, 홍수, 호우, 해일, 태풍, 강풍, 이상저온, 조수, 한파, 병해충, 일조량 부족, 폭염

** (2호: 30ha) 서리, 우박, 대설 / (3호: 10ha) 야생동물 피해

- (가축·시설·농경지) 모든 농업재해에 대해 시·군당 3억원 이상(4호)

※ 모든 농업재해에 대하여 3억원 이상 피해기준이므로 시행규칙 개정 불필요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특기할 사항 없음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에 “황사”를 추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)	제2조(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1. 가뭄, 홍수, 호우, 해일, 태풍, 강풍, 이상저온, 조수, 한파, <u>폭염</u> , 농 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병해충, 일조량 부족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 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 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 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	1.----- -----, <u>폭염</u> , <u>황사</u> ,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~4. (생 략)	2~4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95